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723 발의연월일 : 2021. 12. 7.

발 의 자:정진석·강기윤·구자근

권명호 · 권성동 · 김기현

金炳旭・김석기・김선교

김성원 · 김예지 · 김정재

김태호 · 김태흠 · 김희곤

박대수 • 박덕흠 • 배준영

서일준 · 서정숙 · 성일종

송언석 · 엄태영 · 유상범

유두현 • 유주경 • 이명수

이양수 · 이 영 · 이 용

이종배 • 이종성 • 이채익

이철규 • 정경희 • 정동만

정운천 · 정희용 · 조명희

조해진 • 주호영 • 지성호

최춘식 · 최형두 · 추경호

태영호·하태경·한무경

홍문표 의원 (4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수도권의

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,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.

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점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더 불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설치하여 국정운영의 효율화 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나,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음.

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,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,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(안제2조제1호, 제16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본문 중 "대통령은 제외하며, 이하"를 "이하"로 한다.

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본문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,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항단서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④ 이전계획에는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행정중심복합도시"란 제16	1
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	
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(<u>대통</u>	<u>০</u>) কী
<u>령은 제외하며, 이하</u> "중앙행	
정기관등"이라 한다)을 이전	
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	
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	
도시로서, 제2호에 따른 예정	
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	
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	
한다. 다만, 제5조에 따라 법	
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	
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.	<u>.</u>
2. • 3. (생 략)	2.•3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	제16조(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
획) ① ~ ③ (생 략)	획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이전계획에는 대통령과 그
	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
	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
	원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되
	<u> 어야 한다.</u>

		(F)	(생	략)
(4)	•	$\langle O \rangle$	(/ 次	4)

⑥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·제4 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.

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	제4항	및	제5항
과 같음)			
<u>⑦</u>			
			<u>제5</u>
<u>항</u> 제6항			
제5항			